

##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

발급번호 :

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발주자<br>(건축주)      |    | 전화번호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주 소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용역업체              |    | 설계자<br>(연락처)   |               |
| 주 소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건축허가<br>번호        |    | 건축현장명<br>(소재지) |               |
| 검토의견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보완사항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관련 근거<br>(기술기준 등)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확인자               | 소속 | 성명             | (서명 또는 인) 연락처 |

[ ]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.

[ ]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합니다.

※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 시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 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